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44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김정원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윤경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영

변론 종결2021. 6. 22.

판결 선고2021. 8.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68,483원과 그 중 14,992,660원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3,783,445원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97,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7,497,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45,068,483원과 그 중 14,992,660원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89%의, 3,783,445원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8. 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5,068,483원과 책임재산 7,497,333원 중 더 적은 금액인 7,497,33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7,497,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6년 가량 어머니인 망 D(피상속인)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세금 등을 전부 부담하여 왔는바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므로 기여분 100%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 피고 B이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구매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2014. 10. 1.경 피고 C이 피고 B을 대신하여 매도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 3,000만 원은 피고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라 할 것인데, 이 특별수익 금액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B의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③ 설령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년경 구미시 E아파트 F호를 매도인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도인 G에게 지급할 매매잔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 C이 2014. 10. 1. G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인 망 D가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①, 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희

별지